

발송번호: 9-5-2019-091946713  
발송일자: 2019. 12. 19.

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-3, 청  
호빌딩 201호 (역삼동)(비전특허법률사무  
소)

정순원 귀하(귀중)

06234

YOUR INVENTION PARTNER

## 특 허 청 특허결정서

출 원 인 성 명 장석호 외 1 명 (특허고객번호: 420000309262)  
주 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, B동  
1104호(소하동,광명테크노파크)

대 리 인 성 명 정순원  
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-3, 청호빌딩 201호  
(역삼동)(비전특허법률사무소)

발 명 자 성 명 장석호  
주 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, B동  
1104호(소하동,광명테크노파크)

출 원 번 호 10-2019-0016742

발 명 의 명 칭 발전 겸용 전동수단을 이용한 디스크 브레이크 장치

청 구 항 수 3

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.  
(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.)

### [특기사항]

이 건 발명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2019.12.18 까지 출원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이 날짜 이후 조약우선권 주장을 통해 진입하는 출원에 의한 특허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. 끝.

### [참고문헌]

1. JP05112227 A
2. KR1020120051177 A
3. KR200132736 Y1
4. US4937483 A

### [직권보정 사항]

번호	보정항목	보정위치	보정전내용	보정후내용	보정사유
1	청구범위	제1항	각각브레이킹	각각 브레이킹	띄어쓰기 오기

2019. 12. 19.

특허청

기계금속기술심사국

일반기계심사과

심사관 김창호

김창호



<< 안내 >>

**【 직권보정 안내 】**

1.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할 때까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(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)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특허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.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3. 직권보정 사항은 등록공보에 함께 기재됩니다.

**【 등록료 납부,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 개시, 특허기술상신청 안내 및 등록공보 확인 등 】**

1. 등록료 납부안내
  - o 특허료 납부예정금액(1~3년차분) : 162,000 원(1~3년차분을 정상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), 81,000 원(50% 감면대상자인 경우), 48,600 원(70% 감면대상자인 경우)
  - o 특허료의 정상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납부하거나, 특허료납부기간 중 특허료의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위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- o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첨부파일(특허료 납부 안내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2. 출원인은 이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(다만,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)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.
3. 2018. 7. 1. 설정 등록부터 등록증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납부서(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서식 제25호)에 등록증 수령 방법을 전자로서 수령으로 선택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경우, 특허료의 「전자등록증 수신함」과 특허고객번호상의 e-mail을 통해 전자등록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동봉된 납입고지서로 설정 등록료를 납부시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등록증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4. 내국인은 매년 2월, 8월경 특허기술상 홈페이지(<http://www.patent.go.kr/jsp/kiponet/mp/patentprize/index.htm>)에 공지된 신청기간에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(고안)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- o 신청기준일(상반기의 경우 매년 2월 1일, 하반기의 경우 매년 8월 1일)로부터 5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발명(고안)
  - o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「약사법」 또는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,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유효성·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신청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이 발생한 발명
5. 출원인은 설정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(다만, '12.3.15. 이후의 출원이고,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된 경우에 한 함)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.
  - ※ 등록공보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7일 전후로 특허청 홈페이지(특허마당→인터넷공보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심사관의 직권 보정사항이 있으면 평균 등록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  - ※ 「특허로」 고객센터에서 알람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심사관 지정 알람, 마감기한 알람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이메일과 휴대폰(SMS)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  - ※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([www.ipacademy.net](http://www.ipacademy.net))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  - ※ 이 통지서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특허청 ☎ 042-481-3396(담당심사관 김창호)로, 서식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허고객상담센터 ☎1544-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4동 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

**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,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!**